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김준혁 · 김영진
김승원 · 백혜련 · 박균택
김병주 · 이용선 · 송기현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·예술적·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,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.

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회적”을 “사회적·종교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근현대문화유산”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·예술적· <u>사회적</u>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적·종교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